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판 결

사건 2016가단4368 손해배상(기)

원고 서울가스이엔지 주식회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전2길 55 (유현리)

대표이사 이영환

피고 주식회사 한국가스신문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31길 19, 603호

대표이사 양영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정성영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압가스 저장탱크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스산업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국가스신문'을 빨간하는 신문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9. 한국가스신문(오프라인 주간신문)에 원고가 2012년 12월경 반도종합가스(반도에너지)에 고압가스 초저온 저장탱크의 검사합격증 및 명판을 위조해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별지1 기재 기사와,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원인과 피해 실태, 원고에 대한 검찰조사 상황, 업계의 반응 등을 분석한 내용의 별지2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동일한 기사를 인터넷 신문에는 2014. 11. 23.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달라 완전히 허위이고, 오직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가 훼손되고 신용도 악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무형적 손해에 대하여 5,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파단

## 1)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의 경우

가) 그런데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이영환은 2014년 4월경 반도에너지에 납품한 고압가스 저장탱크에 검사합격증명서와 명판을 위조하여 부착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별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실, 위 이영환은 2015. 7. 25. 김양택(제이가스설비)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명판 등을 부탁한 고압가스 저장탱크를 공사계약에 맞는 규격의 가스탱크인 것처럼 반도에너지의 대표자를 속이고 납품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134), 이영환은 무죄의 취지로 다투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형만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을 뿐 사기죄에 대한 유죄의 판단 자체는 유지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5노2544), 2016. 5. 12. 이영환의 상고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반도에너지에 납품한 고압가스 저장탱크의 검사합격증명서 및 명판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주요 보도 내용으로 다룬 이 사건 기사는 그 전체 내용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것

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특히 허위 또는 악의적 비방이라 지적하는 '서울가스이엔지(원고)와 제이가스설비 두 업체는 발주업체와의 저장탱크 공급계약을 무시하고 저장탱크를 상환 독촉의 수단으로 삼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일삼아 왔다, 원고가 납품한 저장탱크의 진공파괴로 A/S가 폭주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면에 주요 보도로 실린 별지1 기재 기사에 부수하여 그 원인과 배경 등을 분석한 별지2 기재 기사 중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및 맥락을 고려할 때 위 부분이 가지는 비중과 의미가 크거나 보도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그 내용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본질적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 3) 위법성 여부

또한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사는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안전 및 품질 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고압가스 저장탱크의 검사합격증명서 및 규격 등이 기재된 명판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업체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도 보도 및 그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보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남혜영

남예명



별지1

저장탱크 명판위조…검찰조사의 화살은

118281201452-1182739878123-00-00

온라인 기자 [syhan@gaznews.com](mailto:syhan@gaznews.com)



1. 서울가스이엔지가 영관을 위조해 낭비한 초저온저장탱크가 반도증합가스에 설치됨 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설개선 명령을 미안한 손상을 입은 반도증합가스가 피해보상을 호소하고 있다. 2. 서울가스이엔지가 제조해 반도증합가스에 설치된 절소저장탱크의 영관, 하지만 위조된 영관으로 인해 반도증합가스에 시설개선 등 추가비용과 손실이 발생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서울가스이엔지에 벌금 200만원  
고양가스연계 "가스약정교사 겸사사시스템 혐의를 선고"

고압가스충전소 등에 설치되는 초자은저장탱크의 경사합격증 및 명판을 위조해 납품한 사실이 밝혀져 군내 초자은저장탱크제조업체들이 수렁이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의 초저온저장탱크제조업체인 서울가스이엔지에 저장탱크의 검사합격증명서 및 명판 기재사항 일의변경 혐의로 올해 초 별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사건처분결과는 서울가스이엔지(대표 문현숙·실제 경영자는 남편 이영환·최근 이영환으로 대표이사 변경)가 제조한 초저온저장탱크를 고압가스시설시공업체인 체이가스설비(대표 정선자·실제 경영 및 시공은 남편 김양택, 최근까지 익산에서 사업하다 현재 폐업)가 2012년 12월 충남 태안군 소재의 반도종합가스에 당초 계약(2012년 8월)된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를 설치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가스이엔지가 반도종합가스에 설치하기로 한 저장탱크는 탄산(SCO-12-016), 산소(SCO-12-031), 아르곤(SCO-12-034), 질소(SCO-12-035) 등이었는데 12월 7일 반도종합가스에 도착해 설치된 저장탱크는 탄산(SCO-12-053), 산소(SCO-12-052), 아르곤(SCO-12-051), 질소(SCO-12-050) 등이며 저장탱크에 부착된 명판의 제조번호 및 내용적을 위조, 부착한 것이 드러났다.

더욱이 서울가스이엔지의 저장탱크의 설치시공을 맡은 제이가스설비는 저장탱크가 뒤바뀐 사실을 알면서 이를 확인하고 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탄산저장탱크는 당초 10톤에서 12톤으로, 아예 용량이 더 큰 제품이 도착해 저장탱크 본체의 자지대가 더 넓어 미리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기초 위의 링커볼트를 다시 박아 설치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처럼 가짜 명판을 부착한 저장탱크의 설치로 인해 반도종합가스는 공기 자연에 따른 영업 손실 등 악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앞으로도 시설 개선에 따른 각종 비용의 추가 등 지속적으로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가스이엔지 및 제이가스설비에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저장탱크를 검사한 가스안전공사에도 2013년 11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민원을 접수한 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서울가스이엔지를 상대로 서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경찰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고압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서울가스이엔지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장탱크를 낭품했거나 제조번호가 전혀 다른 저장탱크의 명판을 위조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가스안전을 단부시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써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업계 관계자들은 "저장탱크를 검사하는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각인기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처럼 엄청난 명판 위조행위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서 "이는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시스템에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로, 가스안전공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태안군은 이달 10일 반도종합가스에 고압가스충전시설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미 많은 손실을 입은 반도종합가스가 또 다른 비용부담 등으로 명들고 있는 것이다.

명판을 위조한 서울가스이엔지는 벌금 200만원만 부과 받았지만 정작 피해업체인 반도종합가스는 손실액이 경경 높어나는 등 불합리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고압가스업계에서는 지금 가스안전공사의 입장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곰곰이 따져 보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스안전을 담보로 명판을 위조한 비정상적인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서울가스이엔지를 대상으로 한 200만원의 벌금부과로 마무리될 순 없다. 피해업체인 반도종합가스가 서울가스이엔지 및 제이가스설비를 상대로 또 다시 고소장을 지난 10월 제출함으로써 2차로

별지2

## [포커스] 초저온저장탱크 가짜 명판, 왜 생겨났나

[1182호] 2014년 11월 23일 (금) 23:10:00

한한영 기자 [syhan@gasnews.com](mailto:syhan@gasnews.com)

### 이익에 급급, 품질 뒷전…소비자 기만하면 퇴출시켜야

가스안전공사 각인기 관리 등에 의혹 지울 수 없어

소비자 피해 심각…대전지검 서산지청 2차조사 중

서울가스이엔지 제품, 진공파괴로 A/S 폭주하기도



당초 계약한 서산저장탱크의 용량과 다른 크기의 재물이 반도종합가스에 도착해 엔카밸트를 다시 빠져 설치됨.  
모습. 원내는 당초 설계된 엔카밸트.

그동안 가스용기, 뺨브, 개령기 등의 일부 제조업체들이 가스안전공사의 각인을 위조해 팔는 사례가 있었지만 1기예 수천만원이나 하는 초저온저장탱크의 명판을 위조한 것은 처음이어서 고압가스업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대전지검 서산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부과 받은 서울가스이엔지는 고압가스시설시공업체인 제이가스설비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던 탓에 제이가스설비가 악속한 상환기한을 넘길 때마다 저저장탱크 제품납기일을 늦추는 일이 많아 저저장탱크 발주업체들이 공기 지연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반발했다.

그야 말로 이들 두 업체는 발주업체와의 저장탱크 공급계약을 무시하고 저장탱크를 상환 독촉의 수단으로 삼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일삼아왔다. 특히 이 두 업체는 최근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회사를 아예 폐업시킴으로써 경영환경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소문이 고암가스업계에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고암가스업계 안팎에서 부정적으로 평판이 나 있는 이들 두 업체의 이영환 및 김양택씨는 최근 수개월 내지 1년 이상 본지의 전화취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가스이엔지의 저장탱크는 품질에도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소재의 CS 가스텍에 납품한 질소저장탱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설치한 직후부터 진공파괴로 A/S가 발생, 단열재인 인슐레이션을 추가로 주입하는 등 수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저장탱크는 아직도 진공단열의 유지가 잘 이뤄지지 않아 CS가스텍 사업자의 속을 썩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업체인 CS가스텍 측은 서울가스이엔지가 A/S를 미루는 등 배짱을 부리며 감의 행세를 향으로써 힘 없는 을의 신세로 전락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편 2012년 당시 서울가스이엔지의 저장탱크를 검사했던 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소속의 J 차장(현재 본사 검사지도처 근무)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반도종합가스에 설치된 저장탱크는 모두 검사한 제품이며 서울가스이엔지 측에서 그라인더를 통해 영관의 제조번호 및 내용적을 알아치우고 새롭게 세겨 넣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반도종합가스에 설치된 저장탱크도 철판, 성형, 용접, 비파괴, 내압 등의 모든 검사를 절차에 따라 거쳤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올해 2월 반도종합가스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2012년 12월 7일 반도종합가스에 도착한 저장탱크 모두가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저장탱크가 검사를 받은 제품인지, 받지 않은 제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다.

공문내용 가운데 저장탱크 검사일자를 보면 탄산(SCO-12-016), 산소(SCE-12-031), 아르곤(SCE-12-034), 질소(SCE-12-035) 등은 모두 2012년 12월 6일로 명시돼 있으나 반도종합가스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검사일자는 탄산(SCO-12-053) 미 접수, 산소(SCE-12-052) 진행 중, 아르곤(SCE-12-051) 진행 중, 질소(SCE-12-050) 2012년 12월 24일 등으로 적혀 있어 2012년 12월 7일 기준으로 모두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 내용증명서 회신내용

○ 12번 관련 검사합격증 및 제조번호 등의 검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검사합격증 (제조공사)		내용적 (L)	검사일자	반도종합가스 (설치명판/검사합격증)	내용적 (L)	검사 일자
	품명	제조번호					
1	한산	SCO-12-016	10,779	2012.12. 6	SCO-12-053	-	미 접수
2	산소	*SCE-12-031	19,173	2012.12. 6	*SCE-12-052	9,501	진행 중
3	알곤	*SCE-12-034	9,650	2012.12. 6	*SCE-12-051	9,501	진행 중
4	질소	*SCE-12-035	9,650	2012.12. 6	*SCE-12-050	9,650	2012.12.24

\* SCO로 잘못 표기한 것을 SCE로 수정함

올해 2월 10일 반도종합가스가 가스안전공사에 내용증명서를 보낸 대로, 가스안전공사가 2월 19일 표로 만들어 반도종합가스로 보낸 회신내용. 문제가 된 초기온저장탱크 링판에는 제조번호, 내용적 등이 모두 바뀌어 있으며 검사도 받지 않은 제품이 올려져 있는 등 가스안전공사 검사체계의 하婺이 드러나 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 서울가스이엔지가 영판 임의변경 사실을 인정해서인지 변경 기술검토서를 직접 만들기도 했으나 아직도 반도종합가스에 저장탱크를 변경 설치해 주지 않는 등 무심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저장탱크를 검사한 가스안전공사도 절차에 따라 검사를 했으므로 이 사건에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어 결국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반도종합가스만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종합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 민원 제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올해 2월 가스안전공사 본사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했고, 올해 10월에는 서울가스이엔지와 제이가스설비를 상대로 대전지방경찰청 서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도종합가스는 또 가스안전공사에 보낸 내용증명서를 통해 서울가스이엔지 저장탱크의 제조번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40번대의 저장탱크가 어디에 설치됐는지, 저장탱크 설치업체 현황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가스안전공사가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해 말리겠다고 회신함으로써 가스안전공사의 각인기 관리에 대한 의혹은 풀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도종합가스의 고소장 제출로 현재 대전지방경찰청에서 2차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서울가스이엔지 측이 어떠한 방법으로 영판의 제조번호 및 내용적을 위조했느냐 하는 것이다.

고암가스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발단에 대해 서울가스이엔지와 제이가스설비가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무시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처럼 비도덕적인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기온저장탱크 및 고암가스시설시공 발주업체는 이를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는 과정에서 저렴한 단가만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품질 및 기타 A/S의 제공 등도 꼼꼼히 따져야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